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3005
------------	------

2025. 9. 2.
주택공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25. 8. 11. 김태수 의원 발의 (2025. 8. 14. 회부)

2. 제안이유

건축법 시행령에서 감경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대상 중 고의성이 없고 위반 면적이 경미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확대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존 위반건축물을 매수한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적용(안 제45조제5항제1호)
- 나. 위반면적이 경미한 경우나 임차인이 있어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3년으로 확대 적용(안 제45조제5항제2호)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 이 개정조례안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중, 고의성이 낮고, 시정이 어렵거나, 위반면적이 경미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현행 1년 또는 2년이던 감경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④ (생략)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⑤ ----- ----- ----- -----.
1.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u>1년</u>	1. ----- ----- ----- <u>3년</u>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u>1년</u>	2. ----- 제5호 까지와 제7호----- ----- ----- <u>3년</u>
3. 영 제115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u>2년</u>	3.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와 제6의2호----- ----- <u>1년</u>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 「건축법」 제80조의2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감경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 이에 조례에서는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대상에 대해 감경기간을 집합건축물의 위반면적이 5㎡이하인 경우 2년, 그 외에는 모두 1년으로 정하여 2016년부터 운영해왔음.
-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가축분뇨법」 상 배출시설 관련 사항은 종전과 같이 1년을 유지하되, 고의성이 낮고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감경기간을 3년¹⁾으로 확대하는 것임.

<감경대상별 감경기간 확대 사유 및 조례개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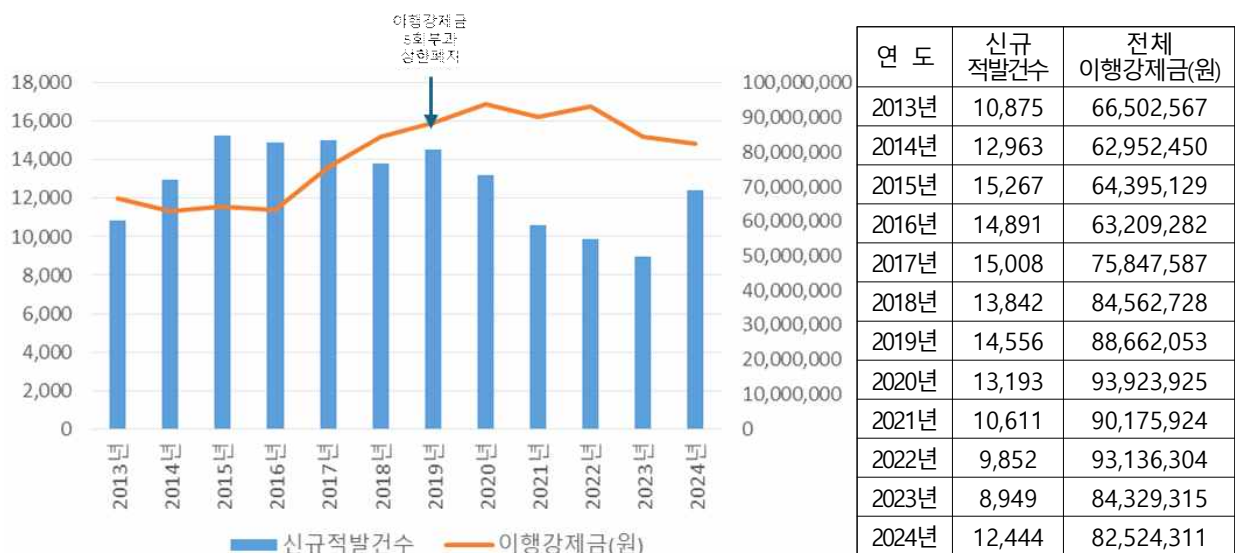
시행령 상 감경대상 (시행령 제115조의4 ① 해당 각 호)	사유	조례상 감경기간 (조례 제45조⑤ 해당 각 호)	
		현행	개정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영 제1호)	고의성낮음	(1호) 1년	(1호) 3년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영 제2호)	시정어려움	(2호) 1년	(2호) 3년
위반면적이 30㎡ 이하인 경우(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영 제3호)	경미한위반		
사용승인 당시 위반사항으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영 제5호)	고의성낮음		
「가축분뇨법」 상 배출시설 관련(영 제6호, 제6의2호)	-		(3호) 1년
건축조례로정하는 경우(재난·재해 등긴급조치 위한 건축물)(영 제7호)	불가피한사정	(3호) 2년	(2호) 3년
집합건축물 구분소유자가 위반면적이 5㎡ 이하(공동주택,근생)(영 제4호)	경미한위반		

1) 감경기간의 상·하한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최근 그 하한을 3년으로 규정하는 법안(의안번호 제220979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위에서 심사중임. 해당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1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취지가 바람직하고 자치단체별 감경기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대폭 확대할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집행별로서의 이행강제금 효과가 저하된다는 우려²⁾도 제기되는 바, 개정안에서 감경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시정 여건과 시민 부담 경감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위반건축물 신규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되면서 그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나, 2024년 급증하였음.³⁾

<서울시 이행강제금 신규적발건수 및 이행강제금 부과액(2013~2024)>⁴⁾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분포(기초자치단체)>

90일	4개월	6개월	1년	1~2년	2년	3년	5년	10년	미정 등	합계
3개	2개	3개	93개	36개	40개	34개	3개	1개	11개	229개
1.3%	1.0%	1.3%	41.2%	15.9%	17.7%	15.0%	1.3%	0.4%	4.9%	100%

※ 자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_권영진의원 2209790), 6p.

- 2)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실효성 저하로 인하여 감경기간 상한을 2년으로 정하자는 의견(인천광역시), 감경기간 완화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경기도 광명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3) 이태원 참사로 불법건축물 전수조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등 대책마련 때문인 것으로 보임
- 4) 주택실 내부자료

- 한편 최근 서울시가 시행 중인 ‘제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적 완화에 따른 증축건축물 추진⁵⁾’ 및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한 ‘특정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⁶⁾ 시행으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위반건축물 수가 감소될 것으로 보임. 금번 감경기간 확대는 위 조치들로도 해소되지 못하는 감경대상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므로 위반건축물 방조와 같은 부정적 효과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금번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부담완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것으로, 감경기간 완화를 보다 폭넓게 적용하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그 대상을 보다 넓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와 제3호부터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나 이 조례 시행 전에 감경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제45조제5항제1호와 제2호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은 본 조례 개정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날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와 제3호부터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감경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제1호와 제2호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감경 기간의 기산일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 한다.

-
- 5) 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건축 경기를 활성화하고 위반건축물의 합법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기타 건축법 위반 없이 완화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증축한 경우에는 추진을 통해 위반상태에서 해소되도록 함.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완화토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2025.5.19.시행하였음)
- 6)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5.7.31. 신속추진 과제로 ‘특정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선정하였음. 그 내용은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안전상 우려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의 특정 용도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 건축규제 합리적 개선(건축물의 일조, 높이, 면적 등 과도한 규제를 발굴해 완화하여 위반건축물 감소), 위반건축물 관리체계 개선(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와 처벌 실효성 확보, 매수인·임차인 피해 예방 등 위반행위 재발 방지)임.

- 부칙 제2조는 본래 이행강제금의 감경대상임에도 그간 감경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은 경우, 그 기산일을 조례개정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날로부터 3년까지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하지만 이 부칙에 따라 감경대상이 어느정도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는 불법 적발 이후 이행강제금 산정 및 부과시에는 별도 대장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부칙 제3조는 조례 개정 이전에 이미 감경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라도,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지 3년 이내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부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임차인의 의무 임대기간은 법상 2년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외한 것으로 이해됨.
- 또한 그 개정 조례의 시행일을 정함에 있어, 이행강제금을 통상 연 1회 부과되는데, 실제 부과 시점이 자치구별로 상이(불입3)하여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시 감경 확대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⁷⁾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가 시민 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시

7) 각 자치구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2022~2025), 기존 적발사항에 대하여 부과하는 ‘반복부과’건을 이미 부과한 자치구가 3개소(강서,영등포,강동)으로 확인됨.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의안심사지원팀장	강 대 만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홍 예 지	02-2180-8205

[붙임1] 관계법령(p.8)

[붙임2] 현행조례(p.11)

[붙임3] 자치구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부과시점(월,최근3년)(p.13)

□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2020. 12. 8.>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2020. 3. 24.>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3. 26.>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11.]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9. 4., 2024. 6. 18.>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8. 9. 4., 2024. 6. 18.>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75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5. 7. 14.] [서울특별시조례 제9763호, 2025. 7. 14., 일부개정]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개정 2012.11.1, 2018.7.19, 2019.7.18>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83조에 따른 용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개정 2018.7.19>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7.9.21, 2019. 7. 18.>

④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75으로 한다.<신설 2016.9.29, 2017.9.21, 2025.1.3>

⑤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신설 2016.9.29, 2017.9.21, 2018.7.19>

1.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3. 영 제115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

⑥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6.9.29>

1. 위법공사 진행 중에 공사 중지 등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원상복구 등 조치 없이 위반을 한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된 경우 포함)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 ⑦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신설 2019. 7. 18.>

[전문개정 2009.11.11.]

붙임3**자치구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부과시점(월,최근3년)**

※ 반복부과: 당해연도 신규 부과건이 아닌 경우, 시기를 정하여 일괄로 부과하는 것임.

- 대부분 매년 후반기에 부과, 일부 자치구는 분기/반기에 나누어 부과(강서,영등포)

자치구	2022	2023	2024	2025(예정)
종로	12	11	10	(11)
중구	12	12	9	(9)
용산	12	12	12	(12)
성동	12	12	(‘25년) 1	(12)
광진	11	12	11	(11)
동대문	12	11	11	(11)
중랑	10	11	10	(10)
성북	12	12	12	(12)
강북	12	11	11	미정
도봉	12	9	9	(9)
노원	12	12	12	미정
은평	12	12	12	(12)
서대문	12	12	12	미정
마포	12	11	9	미정
양천	12	12	12	미정
강서	4, 6, 8, 12	3, 6, 10, 12	7, 11	6, (11)
구로	11	11	12	미정
금천	11	12	12	미정
영등포	11	7, 12	6, 11	6
동작	3	11	11	(11)
관악	5	12	11	(10)
서초	11	11	9	미정
강남	12	12	12	(12)
송파	12	12	11	미정
강동	7	11	8	8

*주택실 건축기획과 제공자료